

## 생활 속 법률이야기

긴급체포 도중 발생한 새로운 범죄혐의에 근거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원래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할까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할까요?

### 〈사건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에 있던 A씨는 다른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러나 (1) 당시 상황은 경찰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를 우연히 만난 경우에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A씨는 자신에 대한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A씨는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키는 등 거칠게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A를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별도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이에 대해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한 직후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상황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과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원래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과연 적법할까요?

### 체포절차의 적법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관련 법률과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648 판결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 ② 제77조 제3항(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64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그 상대방을 만난 경우로서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가 착수된 단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체포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별도의

현행범 체포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 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결론

1. 급속을 요하는 대에는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한 후에 체포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피의사실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그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에 제반 절차도 준수하였다면 체포 및 그 이후 절차에 위법이 없다.

위 사건에서

우리 사법부는 A씨를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해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이상, 본래의 범죄 혐의에서 기인한 체포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A씨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체포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